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해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 규정(안 제19조)

- 거짓 신고에 대한 법정 상한액(500만원)에 따라 위반 차수별 차등 부과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0. 11. ~ . .)
- 3) 행정규제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법 제56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위반행위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법 제56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법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1회란 “100”을 “200”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2회란 “150”을 “400”으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3회란 및 같은 호 위반행위 라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4회 이상란 중 “200”을 각각 “500”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2항”을 “법 제5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사목의 근거 법

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법 제56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위반행위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법 제56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법 제56조제2항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u>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u>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50	100	150	2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	150	200	200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00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20	50	100	100
라.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400	500	500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	100			
바.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	50	100	100	100
사.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호	100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5호	50	100	150	200
자.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6호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 205 - 7472